

제 1172 호
1985. 9. 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 도 관
편집인 : 공 도 관 이 광 우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590 호 :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사지정 2

제 591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변경 2

제 592 호 : 사당제2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결정 (1지구)..... 2

제 593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 및 하수도)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. 3

공										
관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590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자지정

- 1. 건설부고시 제 470 호 (73.12.1) 및 동고시 제 55 호 (81.2.20) 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766 호 (84.12.18) 로 사업계획결정된 충청 1 구역 제 2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 제 10 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1985. 9. 9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구역

- 1) 명칭 : 충청 1 구역 제 2 지구
- 2) 위치 : 중구 중림동 819,905 번지 일대
- 3) 면적 : 12,592.3 제곱미터

나. 사업내용

- 1) 건축계획 : 단독 또는 공동 (연립)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
- 2) 건폐율 : 50 % 이내
- 3) 용적율 : 300 %

다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91 호

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변경
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 495 호 (85.7.25) 로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57-1 일대 소매시장 신축공사는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를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·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 9.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- 가. 건축물 용도변경 (10층)
(기정) 식당가
(변경) 소극장
- 나. 공사설계도면 : 별첨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92 호

사당제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결정 (1 지구)

- 1. 건설부고시 제 227 호 (85.5.18) 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역결정된 사당제 2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

<p>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8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 및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</p>		<p>보인다.</p> <p>1985. 9. 9.</p> <p>서울특별시 장</p> <p>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</p> <p>나. 구역명 : 사당제 2 구역 (1 지구)</p> <p>다. 구역분할</p>	
구역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사당제 2구 1 지구	동작구 사당동산 24 의 1 일원	10.910	금회사업결정후
" 2 지구	" "	62.190	추후 사업결정
<p>라. 편적 : 10.910 평방미터</p> <p>마. 공공시설계획 : 별첨 (생략)</p> <p>바. 건축계획</p> <p>1) 주된용도 :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</p> <p>2) 건립형태 : 공동주택 (아파트)</p> <p>3) 건폐율 : 22% 이내 (")</p> <p>4) 용적율 : 230% " (")</p> <p>5) 최고높이 : 51 미터</p> <p>6) 배치도 : 별첨 (생략)</p> 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593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도로및하수도)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</p> <p>1. 서울특별시 공고제 433 호(84.7.</p>		<p>26) 로 공람공고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 613 호 (84.10.22) 로 인가고시된 개봉 70 의 16-74 의 19 간포장공사의 인가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 보인다.</p> <p>1985. 9. 9</p> <p>서울특별시 장</p>	
고 시 안 변 경 내 용			
구분	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	사유	비고
당초	인가일 : '85. 6. 28	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	
변경후	인가일 : '85. 12. 31		